방사선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계획(안)

2024. 7.

KARA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

Ⅰ. 추진목적

❑ 목 적

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**기술혁신, 산업육성, 국민건강 증진** 등에 기여한 **유공자를 선정**하여 **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,**

❍ 방사선 분야 **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** 및 **방사선 기술**에 대한 **국민적 이해도 제고**를 위해 추진

Ⅱ. 포상 후보자 공모

❑ 포상 개요

❍ **(포상 종류 및 규모)**

- **(개인)** 개인의 공적에 의한 포상
- **(단체)** 기관(단체) 및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포상

구 분	포상 종류	규모	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	단 체	3점	10점
	개 인	7점	
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회장 표창	단 체	1점	6점
	개 인	5점	

* '23년도 장관표창: 8점(단체 2, 개인 6), 협회장 표창: 5점(개인 5)

* 협회장 표창 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❍ **(표창시기) 'KARA 2024' 행사**

* (일정) 2024년 11월 14일(목), (장소) 한국과학기술회관(서울시 강남구 소재)

Ⅲ. 추천 대상 및 제한사항

❑ 추천 대상(공적 분야)

- **(기술혁신)** 원천기술 개발, 성숙기술 고도화, 미래형 방사선 기술 개발 등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
- **(산업육성)** 방사선 산업육성·이용 증진, 정책·R&D 기획, 규제·제도 개선,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, 전문인력양성 등에 기여한 자
- **(국민건강증진)** 방사선 진단·치료기술 개발,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, 방사선의학 실용화 등에 기여한 자
- **(국민생활안전)** 대기·해양 환경, 보안, 검사 등 방사선 기술 개발 및 고도화(실용화), 방호 기술, 안전관리 개선 등에 기여한 자
- **(인프라활성화)** 시설/장비 구축 및 이용 확대, 산·학·연 협력 강화 등 인프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
- 기타 방사선 이용·진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
❑ 추천 기준

기 준		주요 내용
일반기준	단체	•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구체적·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* 산업체, 연구기관, 정부·지자체, 대학, 협회, 재단, 학회, 국제기구·단체 포함 •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·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
	개인	• 국가관, 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
자격기준 **※ 추천 마감일 기준**	단체	• 방사선 관련 분야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기관
	개인	• 방사선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

❑ 추천 제한

❍ 공무원/일반국민 및 단체

가. 단체표창

- 표창(과기정통부 장관/협회장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  * 단체표창은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해야 수상 가능

나. 개인표창

- 표창(과기정통부 장관/협회장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* 공무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. 공통사항

-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표창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포함)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
- 아래에 해당되는 자

표창 대상	확인내용	확인방법
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	[붙임 1]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고
	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	
개인	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	

*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붙임 2 참조

❑ 기타 사항

❍ **(공적기간) 기간의 산정**은 포상(정부 표창, 협회장상)을 받은 날 이후부터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로 기재

* 포상을 받은 자(단체)의 경우에 해당하며, 없는 경우 방사선 분야 근무경력 기재

Ⅳ.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

❑ 심사 기준

① 추천 서류의 적격성 및 공적내용 확인

② 공적기간 중 기여도(포상 등급별 후보자 추천 기준)

③ 방사선 분야 근무경력 및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사명감

④ 방사선 이용·진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한 구체적인 공적의 내용

⑤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중요도

⑥ 기타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

* 국가발전 기여도, 국민생활 향상도, 고객만족도, 창조적 기여도, 공적기간, 업적도, 기여도, 난이도, 평판도, 인지도, 창조도 등

❑ 심사 절차

❍ **(장관 표창)** 한국방사선진흥협회 **공적심사위원회** 심의

⇒ 과학기술정보통신부 **공적심사 위원회** 심의 후 최종 선정

❍ **(협회장 표창)** 한국방사선진흥협회 **공적심사위원회** 심의 후 선정

Ⅴ. 제출서류

❑ 제출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서식
장관 표창	· 유공 포상 추천 **대상자 현황** * "서식 1"은 스캔없이 엑셀 파일로 제출 요망	서식 1
	· **공적조서** * (개인) 조사자 :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 (단체) 조사자 :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	**(개인)** 서식 2-1 **(단체)** 서식 2-2
	· **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**	**(개인)** 서식 3-1 **(단체)** 서식 3-2
	· (**민간인**의 경우) 이력서	서식 4-1
	· (**공무원**의 경우)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	서식 4-2
협회장 표창	· **협회장표창 추천서**	서식 1
	· **공적조서** * (개인) 조사자 :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 (단체) 조사자 :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	**(개인)** 서식 2-1 **(단체)** 서식 2-2
	· **이력서**	서식 3
	· **(개인**의 경우**)** 협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4-1
	· **(단체**의 경우**)** 협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4-2

공적조서 작성요령

- **추천훈격**란은 추천하는 포상훈격에 따라 **장관표창**, **협회장 표창**으로 기재
- **조사자**는 **소속부서장** 또는 **인사부서장 또는 임원**으로 기재
- **공적요지**는 향후 「수여증명서」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**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**
- **공적내용은**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**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**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·계량적으로 기술**(2,000자 이상)**
- **공적기간**은 원자력 및 방사선 전 기간을 합산하되 추천 마감일('24.08.31.)을 기준으로 작성하며, **동일 공적**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, **이후 기간으로 작성**
- **추천 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**
- 주요경력란에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

※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

Ⅵ. 행정사항

❑ 접수 정보

❍ 제출기한 : 2024년 9월 6일(금) 자정까지

* 이메일 제출 시점이 **9월 7일 00시 00분인 경우,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**

❍ 접 수 처 : posang@ri.or.kr

❍ 문 의 처 : 대외협력실 황상근 선임(☎02-3490-7132, hsk@ri.or.kr)

❑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

❍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

❍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

❍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게는 범죄 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받아야 함

*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,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함께 고지

❍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

붙 임 : 제한사유 조회방법

별 첨 : 장관 및 협회장표창 후보자 추천 서식

붙임 제한사유 조회방법

◆ **장관표창**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**두 가지 방법 중 하나**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

※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이상)의 경우,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

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
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-202-7693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(☎ 044 - 200 - 4127)
- 임금체불주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-202-7537)

② 아래의 방법(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)을 통하여 확인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9조의2,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및 그 **임원**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10조,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및 그 **임원**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뉴스·소식>공지사항>"산업재해" 검색**

(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)를 통하여 **최근 3년간**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

② 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”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



○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☞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2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
○ **최근 2년 이내 3회** 이상 **고발** 또는 **과징금** 처분*을 받은 **법인(단체 포함)** 및 그 **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

○ **최근 1년 이내 3회** 이상 **시정명령** 처분을 받은 **법인** 및 그 **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**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** : 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)를 통하여 확인

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

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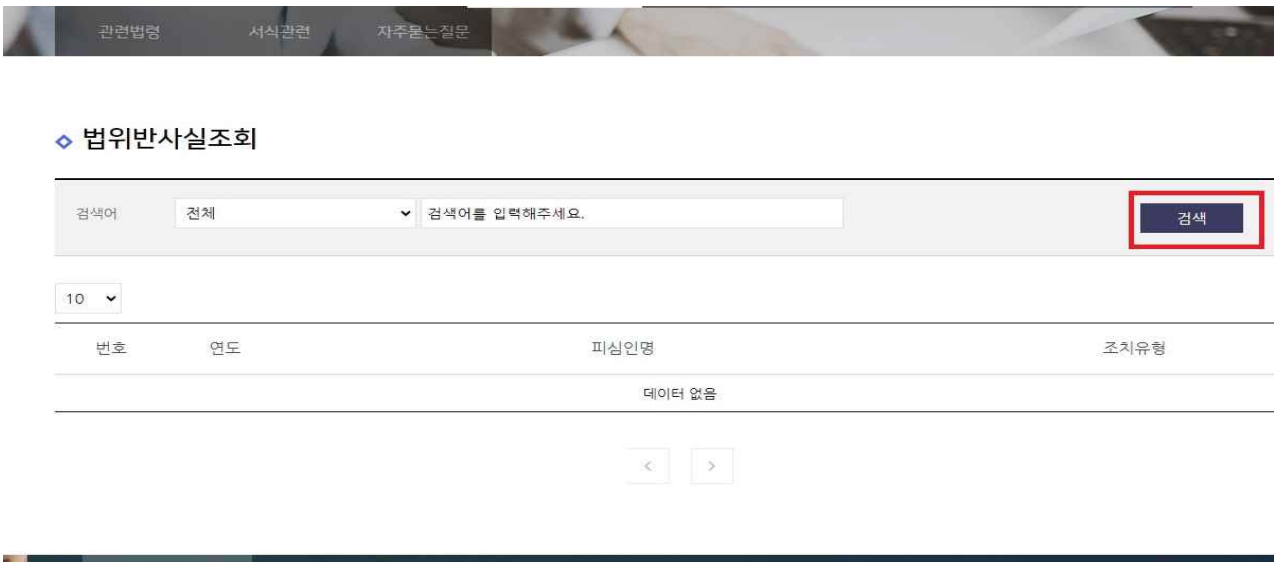

3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○ **최근 3년간 위 법** 제43조의2,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**체불사업주**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43조의3,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**체불사업주**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※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**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)를 통하여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

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

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

